

제951차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

안 건 명 : 2014년 예방 사방사업 실시설계용역

심 사 일 : 2013. 10. 16.

사업개요

- 용역비 : 22,418천원(공사비 : 460,470천원)
- 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60일
- 사업규모 : 10,000㎡, 사면 안정, 골막이, 계간수로 등(신정동 1152-31 등 6개소)
- 발주부서 : 양천구 공원녹지과

심사결과 : 적정(조건부)

| 심사항목 | 심사내용 |
|---|---|
| 1. 용역의 필요성 [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]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미대상 | ○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하여 사전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, 유형별 공법 선정 및 항구적 안전대책 수립 등 전문성이 요구됨 ※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사방사업은 설계(용역) 대상 |
| 2.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-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-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 | ○ 용역비 조정 : 22,418천원 ⇒ 22,535천원(증117천원) - '실시설계' 요율(4.19) 적용 - 사방사업은 손해배상보험료 적용요율 조정 (0.577% → 0.865%, 도로공사 기준) ○ 주민설명회, 전문가 자문 등 추가경비는 자체 검토 반영 ○ 본 용역의 대가조정이 필요한 경우 적정 대가를 적용하고 용역 수행과정에서 용역비 집행 및 정산관리 등에 철저를 기할 것 |
| 3. 조건부여 이행 확인사항 - 용역성과품공개,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심의절차이행 등 | ○ 타당성심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설계내역서와 과업내용서는 용역발주 전에 기술용역 관리시스템(타당성심사)에 등록하여 심사업무가 종결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, 첨부된 <기술용역 추진시 사전확인 사항>을 필히 확인 후 시행할 것 |
| 4. 과업의 내용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 | ○ 과업내용서에 과업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시할 것 - 용역시행 목적을 과업내용으로 공종별로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 - 하도급 관련하여 "발주기관의 사전승인" 선행됨을 명시 - 시방서 제기준 중 산림청 기준을 추가할 것 가. 사방사업의 설계.시공기준(사방사업법제7조의2제2항, 시행규칙제3조) 나. 사방기술교본(산림청) 다.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(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관련) |

| 심사항목 | 심사내용 |
|--|------|
| 5.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- 용역면·중요인의 관리책 적정성 -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책 적정성 | ○ 적정 |

<첨 부>

기술용역 추진시 사전 확인사항

| | 확 인 항 목 | 세 부 내 용 |
|-------------|--|--|
| 용역시스템 | 1. 기술용역관리시스템에 추가 (첨부)등록 | ○ <u>용역발주 전 최종 수정된 설계내역서</u> 및 <u>과업내용서</u> 를 <u>기술용역관리 시스템에 추가 등록</u> |
| 입찰전 | 2.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- 심의절차 이행 -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| ○ 발주부서 는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을 입찰 <u>시행전에 반드시 건설기술 심의절차 이행</u> - 단, <u>서울시</u> 항목별 세부 평가 <u>기준과</u> 모든사항이 <u>동일한 경우</u> 에는 <u>기술심사담당관과 사전 서면 협의로 건설기술심의 대체</u> |
| 심사 및 심의전 확인 | 3. 유관부서 의견수렴 - 사업계획 수립시 TF팀 구성 등 관련부서 참여여부 확인 | ○ 기술용역타당성 <u>심사</u> 및 건설기술심의 <u>요청 전 유지관리부서</u> 및 <u>관련(유관)부서 의견 조회 등 의견수렴</u> - <u>사업계획 수립시</u> 계획부서, 공사부서, 유지관리부서 등 TF팀 구성운영하여 계획단계부터 사업참여 유도 - 유지관리부서 선정여부 등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검토 ※ <u>행정2부시장 방침 제73호(13.5.22)</u> : 준공예정시설물 점검관련 매뉴얼작성 |
| 타당성 조사용역 | 4. 타당성조사 용역시 과업내용서 반영사항 | ○ <u>재원조달방안</u> 및 사업의 타당성 재검증 범위 검토 -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시 <u>재원조달방안</u> 및 타당성 재검증 검토 시행 |
| 용역준공시 | 5.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이행 철저 - 성과품공개 및 자료제공 - 정보소통광장 등록 철저이행 | ○ 발주부서 는 '13.7.1부터 준공되는 모든 기술용역 성과품에 대해 정보소통광장(http://www.gov20.seoul.go.kr)등록 및 서울도서관에 제출 - <u>용역보고서</u> : PDF파일 변환하여 정보소통광장에 등록(<u>준공시</u>) - <u>전체성과품</u> : 인쇄본 3부 및 CD 1부 서울도서관 제출(<u>준공시</u>) · 서울도서관 디지털성과품 표준포맷 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 ※ <u>시장방침 제35호(13.5.24)</u> :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방안 |
| 설계시 | 6.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건설기술 용역 추진시 - 지장물 확인철저 - 지장물로 인한 설계변경 최소화 | ○ <u>공사구간내 또는 인접구간의 지하매설물도</u> 는 우리시 통합공간정보서비스(http://98.33.0.64/gis/index)내 지장물 현황과 비교 검토 - 아울러 <u>지반조사, 현황 측량</u> 시에도 수치지형도를 최대한 이용 |
| 내진 | 7. 내진대상 시설물 내진설계 반영여부 | ○ 모든 공공건축물(규모관계 없이) 및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정한 국가하천수문, 교량·터널 등의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내진설계를 반영 ※ <u>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작성확인철저(구조기술사)</u> |